

추 가 약 정 서

(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OO 상호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담보제공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OO상호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(또는 그 배우자)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(이하 ‘규제지역’) 소재 고가주택(공시가격 9억원 초과)을 매수하며 거주 및 주민등록을 유지(이하 ‘거주’라 함)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제 2조 (매수 대상 고가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현재 주택, 분양권,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매수하는 규제지역소재 고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 3조 (거주 의무)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 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고가주택이 분양권,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.

②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거주를 완료한 경우,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 2조의 매수 대상 고가주택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제 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됩니다.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 2조의 매수 대상 고가주택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